

소장

원 고 한 양

소송대리인 이상훈, 하승수 변호사

피 고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대표자 주지 김 도 후(속명: 김 도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에 대한 설명

가. 원고에 대한 설명

원고는 2000. 1. 31. 소외 조_연, 오_J근 등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관람을 위하여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동 입구를 통하여 설악산에 입산한 자인 바, 피고로부터 문화재 관람료 금 1,200원을 통합 징수 당한 자입니다.

나. 피고에 대한 설명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로서 위 종단에 의해 임명된 주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동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주지와 관리체계의 등록을 마친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입니다.

피고는 국립공원 설악산 설악동 입장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관람료와 통합하여 피고 주지의 명의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국립공원 설악산을 입장할 당시에 원고로부터 문화재관람료로 금 1,200원을 징수한 자입니다.

2.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근거

가.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연혁

일반 국민이 국립공원에 입장하기 위하여는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내게 됩니다. '입장료'는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징수하는 돈'이고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한 대가'로서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원별로 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 징수하거나 합동 징수하였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직전인 87년 4월부터는 모든 공원에서 법적 근거 없이 합동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계종에서는 정부에 합동징수의 근거를 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의 모법은 서로 달라 합동 징수의 법제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1997. 10. 14. 내무부, 문화체육부, 조계종의 3자간에 합동징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는 위 합의에 따라 합동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갑제2호증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은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에만 입장하려는데 왜 문화재 관람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5. 12. 29.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재 관람료의 액은 각 사찰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 지출 내역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의 법적 근거

피고가 설악동 방면의 설악산 입장객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 제시하는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입니다. 동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동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3. 법률상 원인 없음

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2항의 위헌성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는 국립공원 설악산에 입장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일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관람료의 금액에 대해서 위 법 제2항에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현재 98헌바70 결정 참조).

나. 피고가 ‘문화재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2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문화재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설악산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일 뿐 문화재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자체의 소유자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 소유자’가 아닌 것이고, 그러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문화재 관람

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와 같이 피고는 부당하게 문화재 관람료 금 1,200원을 남부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 1,200원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입장권 1부

1. 갑제2호증 '합의사항' 1부

나머지 입증방법은 소송경과에 따라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자 료

1. 「국립공원 30년사」 중 관련 자료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 참고자료 각 1통

1. 소장 부분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증명서 1통

2000. 5.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하 승 수

서울지방법원 귀중